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6366

발의연월일: 2024. 12. 10.

발 의 자: 강준현·김남근·김한규

김현정 • 민병덕 • 이인영

이정문 · 조승래 · 조정식

한창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권상장법인이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제한된 경우에 한하여 특정한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 기회를 부여하고 있음.

최근 주권상장법인이 물적 분할을 공시하는 경우 주가가 하락하여 소액주주들이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물적 분할의 경우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고 있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소액주주의 손실을 보전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 대책으로 분할신설법인이 모집하는 신주를 분할된 법인의 소액주주들에게 우선 배정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를 증권시장에 상장시키기 위해 신주를 모집하는 경우 모집하는 신주의 100분의 70 이상을 분할되는 회사의 소액주주들에게 우선 배정하도록 함으로써 물적 분할로 인한 소액주 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안 제165조의6제5항·제6항 신설).

법률 제 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5조의6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제165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분할(「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분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분할에 한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이 조에서 "분할신설법인"이라고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해당 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을 상장하려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상법」제418조에도 불구하고 분할된 법인의 주주(대주주는 제외한다)에게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모집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70 이상을 우선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된 법인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제5항에 따른 분할된 법인의 주주에 대한 주식 배정의 기준·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적분할로 인한 신주배정에 관한 적용례) 제165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사회가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분할을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530조의3에 따라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기로 결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① ~ ④ (생	등에 관한 특례) ① ~ ④ (현
략)	행과 같음)
<u> <신 설></u>	⑤ 제165조의4제1항제4호에 따
	른 분할(「상법」 제530조의12
	에 따른 물적분할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분할에 한한다)에 의하여 설립
	된 법인(이하 이 조에서 "분할
	신설법인"이라고 한다)이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해당 주권과 관련된 증권
	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을 상장
	하려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상법」 제418조에도 불구하
	고 분할된 법인의 주주(대주주
	는 제외한다)에게 증권시장에
	<u> 상장하기 위해 모집하는 주식</u>
	총수의 100분의 70 이상을 우
	선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된 법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u><신 설></u>	⑥ 제5항에 따른 분할된 법인
	의 주주에 대한 주식 배정의
	<u>기준·방법·절차, 그 밖에 필</u>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